

# 2017년도 양주소방서 종합감사 결과

## I 감사개요

- 감사기간 : 2017. 5. 12.~ 5. 19.(6일간)
- 감사분야 : 2014년 5월 이후 소방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
- 감사결과

감사결과			처분계획						재정상(천원)	
			행정상(건)		신분상(명)			회수		
행정상	신분상	재정상	시정	주의	징계	경고	주의			
15건	11건(29명)	1건(20,000천원)	5	10	-	3	26	-	20,000	

## II 주요 지적사항

### ○ [인사·행정] 교육훈련성적 평정 부적정

- 당해계급 중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 과정(집합교육과 혼합된 사이버교육과정 제외)은 과정당 0.25점으로 평정하되, 평정점은 0.5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
  - (사이버교육 평정점 부적정) 2016년 상반기(2016.6.30.기준)와 하반기(2016.12.31.기준) 근무 성적평정 시 교육훈련성적 중 전문교육에 대한 평정을 하면서 지방소방☆ ♣♣♣이 이수한 "e건축법" 사이버교육 과정에 대하여 과정당 0.25점으로 평정하지 아니하고 0.5점으로 평정하였고, 2015.10.01. ~ 2015.10.30. 기간동안 이수한 "사이버청렴교육" 또한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(2016.06.30. 개정) 점수인 과정당 0.5점으로 평정하여 2개 과정에 대해 1점으로 부당하게 평정하였으며,
  - (사이버교육 평정 누락) 2016년 상반기 교육훈련성적 평정을 하면서 지방소방☆ ♠♠♠가 2016.06.01.부터 2016.06.30.까지 "e임상응급의학1"의 사이버 전문교육을 수료하여, 2013.03.04.부터 2013.03.29.까지 이수한 "안전관리" 사이버교육과 함께 각각 교육과정당 0.25점씩 부여하여 0.5점으로 평정하여야 하나, 2016년 상반기중 수료한 "e임상응급의학1" 전문교육 과정을 누락시켰고,

지방소방☆ ♣♣♣ 또한, 2016.06.01.부터 2016.06.30.까지 수료한 "e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" 과정의 전문교육 평정점 0.25점을 누락하는 등 2016년 상반기 교육 훈련성적 평정 업무를 소홀히 함.

❖【관련규정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1조(전문교육 평정)

### ○ [예산·회계]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소홀

-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고,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이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,
  - 2016년 12월에 소방차량 주유용으로 사용한 유류구매 대금 9,041,400원을 당해연도(2016년)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고 다음연도(2017년) 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함.

❖【관련규정】 지방회계법 제6조(회계연도) 및 제7조(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)

### ○ [재난대응·안전] 구조·구급활동 상황의 기록유지 소홀

- (구조활동상황의 기록유지 소홀)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7조(구조활동 상황의 기록관리)에 의하면 구조활동일지에 구조활동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함에도,
  - ⊗⊗119안전센터 지방소방△ ○○○ 등 5명은 2014.5.1.~2017.3.31.까지 146건의 구조 활동에 대하여 구조·구급활동정보시스템 내 구조활동일지를 입력하면서 구조장소의 형태, 구조의 상황, 현장안전관리사항, 구조작업 단계별 진행사항 등을 상세하게 기록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함.
- (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 소홀)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8조(구급활동 상황의 기록유지) ① 구급대원은 구급활동일지(이하 "구급활동일지"라 한다)에 구급활동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.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,
  - 구급대원 지방소방△ ○○○ 등 13명은 2014.5월부터 2017.3월까지 감사기간 동안 응급 환자를 이송하면서 환자평가시 활력징후를 모든환자에 대하여 측정하고 측정거부시 거부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총 313건의 활력징후 측정을 하지 않는 등 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 업무를 소홀히 함.

❖【관련규정】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(구조·구급활동의 기록관리)

○ [예방·민원] 작동기능점검 업무 소홀

- (작동기능점검 기간 도과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)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,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,
    - A건물 등 9개소는 2015년 작동기능점검 기간을 1월 ~ 7월 도과하여 실시하였으며,
    - B건물 등 20개소는 2015년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를 감사일 현재까지 미제출
  - (대상 누락) 2015년 소방시설법 개정·시행에 따른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대상을 엄정하게 선정하고 누락없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,
    - 담당자의 현황관리 소홀로 C건물 등 37개소를 누락하여 2015년 작동기능점검 미실시
- ❖ 【관련규정】 화재예방,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(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)

수범사례 1 이동탱크저장소 신고 의무사항 안내스티커 제작

□ 관련규정

- 위험물제조소 등 지위승계 또는 용도폐지시 소방서에 신고
  - ▶ 「위험물관리법」 제10조(설치자의 지위승계) 및 11조(제조소등의 폐지)
    - 지위승계(30일 이내) / 용도폐지(14일 이내) /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

□ 추진배경

- 이동탱크의 경우 차량인수, 폐차처리로 행정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착각
  - 소방서에서 지위승계 등 변경신고 누락으로 불이익(과태료) 처분

과태료처분현황	2015년		2014년	
	지위승계	용도폐지	지위승계	용도폐지
경기도전체(건)	103	53	117	99
양주소방서(건)	8 (7.7%)	2 (3.7%)	18 (15.3%)	6 (6%)

○ 불이익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인 불만고조

□ 추진사항

- 홍보 및 안내 스티커 제작 배부 ⇨ 차량등록증·차량내부에 부착



(부착대상) 관내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196대(2016. 8월중 부착완료)  
 (소요예산) 1,000매 x 30원 = 30,000원 소요 / 가로 8cm x 세로 3cm

□ 기대효과

- 행정처분(과태료) 대상의 획기적 감소 ⇒ 행정처분 대상 ZERO

## 수범사례 2 65mm 소방호스 활용 전술기법 개발

### □ 추진방향

- 소방차를 대체한 Y카플링 연장을 통한 소방차량 등 안전사고 방지
- 65mm 소방호스 진압전술 운용으로 입체적·정형화된 대응체계 구축
- 체계화된 전술기법 운용에 따른 최소 소방력으로 최대 효율성 증대

### □ 추진사항

- 기 간 : 2016. 8월 ~ 2017. 5월
- 운 영 : 전술기법 기획 조직단 / 전담TF팀 구성·운용(서장 등 15명)
- 발 표 회 : 2017. 05. 02.(화) / 경기도 소방관서 팀장·담당자 80명
- 등록 / 배포 : 국회 도서관 및 국가기록원 등록 / 전국 소방관서 배포(105부)



### □ 전술 운용 원리

- 방면별 고정배치 차량 세트 편성(펌프 1, 탱크 1) 운용
- 소방차량을 대체한 Y카플링에 65mm수관을 결착하여 화점까지 연장
- 화재진압은 선착대 Y카플링 활용 / 후착대 차량은 급수지원 주력

### □ 향후계획

- 2017. 하반기 중 지역별·대상별 운용전술 추가 개발
  - ※ 증빙자료 : 기제출된 「65mm 소방호스 활용 화재진압전술 연구」